

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Version: 04, dated 20211201

1. 총칙

1.1 Perstorp Group 관계 회사("매도인")가 청약서나 주문 확인서 또는 서명하여 유효한 서면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본 판매일반조건은 매도인이 고객에게("매수인") 제공하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매수인의 조건과 충돌하거나 어긋남이 있을 경우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르며 매수인의 조건은 적용이 배제된다.

1.2 이하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포기나 수정은 매도인으로부터 적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2. 청약과 승낙

매도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약은 청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주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3.1 매도인의 카탈로그, 브로셔, 광고, 전단지, 데이터 시트(Data Sheet)와 가격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양, 공식, 방법, 중량, 가격 및 기타 정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청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양, 공식, 방법, 중량, 가격 및 기타 정보만을 신뢰할 수 있다.

3.2 이하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회수하여 원래의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매도인이 추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당해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제3.2조의 전문에서 규정된 금액에 추가하여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비용을 보상한다.

3.3 매수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나 설명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 어떠한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소송으로 야기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책임 및 요구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할 의무가 있다.

4. 인도

4.1 매도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의 FCA조건으로 행한다(계약일 현재 발효중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

4.2 합의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인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인도기간의 연장이 6주를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제는 매수인이 새로운 인도기간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 기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통보한 인도기간을 새로운 인도기간으로 간주한다. [LK Comment: 본 판매일반조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고객(상대방)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매일반조건은 전반적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해당 조항들에 대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4.3조, 제4.4조 및 제5조는 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관의 무효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을 고려하여, 일단은 원안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4.4 인도 지연시 계약해제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이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위약금, 보수나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은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간접적 손해,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

5. 선적물량

인도된 물량이 계약상 명시된 물량보다 최대 10%까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에 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6. 포장

6.1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반환하여야 하거나 임차한 포장은 매도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포장은 오직 판매 물품의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

6.2 상기 포장은 인도 후 6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기한 내에 포장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사전에 공식적인 통지 없이 매수인에게 지연일수당 포장의 전체 대체비용(동일한 포장을 다시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0.5%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포장 반환 지연일 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포장의 대체비용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반환되어야 할 포장이 파손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매수인은 포장을 복구하거나 새로이 교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3 매수인이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특정 물품의 수송에 관한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을 사용한다.

7. 가격

7.1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세금, 관세 혹은 기타 정부수수료의 변동이나 원자재값이나 운송비 또는 임금 등으로 증대하거나 예기치 아니한 비용이 발생하여 매도인의 물품공급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매도인은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2 매도인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언급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와 유사한 판매세나 판매세를 대체하는 어떠한 세금 또는 어떠한 유형의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8. 지급

8.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대금은 청구서 발행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수송 및 인도에 관한 인코텀즈(INCOTERMS)의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매도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수송/선적을 위하여 물품을 적재한 이후 그 즉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8.2 매도인이 물품의 대금 전액을 수령한 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8.3 인도 완료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적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지불능력의 감소 혹은 잠재적 감소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재정상태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매도인이 발견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인정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8.4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될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물품

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8.5 매수인이 대금 지급일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향후 물품의 인도를 중지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구역 내에 출납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매수인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월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 법령의 준수

9.1 매수인은 관련한 어떠한 부패방지, 부패, 경쟁, 수출규제, 무역 및 경제제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대응과 관련한 기타 해당 지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더하여 모든 EU 및 미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해당 법령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 행위 또는 실행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성을 제한함 없이, 매수인은 만약 해당 제품이 (i)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나 기타 핵물질발전기의 개발, 제작, 취급, 운영, 유지, 보관, 탐지, 식별 또는 보관이나 그러한 무기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의 개발, 제작, 유지 또는 보관 또는 (ii) 어떠한 국가에서의 EU나 그 소속 국가들, 영국 또는 미국의 무기금수조치 대상인 군사 장비의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도인이 인도한 어떠한 제품 및 해당 제품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및 보장한다.

9.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최종사용자 확인서에 서명을 제출 경우, 매수인은 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행동함을 진술한다.

9.3 매도인은 매도인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제9조 위반이 발생 중이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매도인의 고유 재량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통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떠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9.4 매수인은 매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에이전트를 포함한 대리/대표의 제9조 위반과 관련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클레임, 비용(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함에 동의한다.

10. 구제책(불가항력과 곤경)

10.1 불가항력적 이유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장애사유가 제거되거나 극복될 때까지 의무 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3개월 이상 장애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2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물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불가피한 사용을 고려하고, 다른 매도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계약 고객들에게 제조된 물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도인은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공급원 등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0.3 불가항력적 사유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사유를 의미한다. 해당 사유는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군대동원, 전쟁, 전염병, 팬데믹, 재정시스템 고장, 수출입 규제와 기타 정부의 개입 (관련 규제당국에 의한 구체적인 권고, 규제 및 결정을 포함한다), 화재, 사고,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 용수 부족, 생산설비 고장, 기타 생산장애, 수송수단부족, 철도, 항공나 기타 교통기관의 심각한 수송장애, 하청업체의 채무불이행이나 인도 지연 또는 기타

매도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방해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지연하는 여하한 합리적인 상황을 말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0.4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곤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곤란에 대한 주장이 있을 후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매수인은 곤란의 효과를 형평에 맞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대안 조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상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곤란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경감 혹은 완화시키는 대안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1. 물품하자와 부족

11.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된 물품이 매도인이 서면으로 확인한 사양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매도인은 그의 선택으로 자신의 비용 부담하에 교체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문제된 하자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액을 환불한다.

11.2 매도인은 공급된 물품의 하자가 다음을 원인으로 할 경우 하자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i) 매수인(또는 그 직원과 고객)이 물품의 사용, 취급이나 저장에 관한 법규 및 그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기타 정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ii)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송 중 물품의 손상 또는 포장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또는

(iii) 매도인의 인도 후 개조, 오용, 부주의나 사고.

11.3 인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은 부족한 물량을 인도하거나 이미 지급된 판매대금 중에서 부족한 물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한다.

11.4 매수인은 각 선적화물이 도착하면 하자과 물량 부족과 수송 중 포장 파손에 관하여 조사한다.

11.5 매수인은 물품의 하자 또는 물량 부족 또는 포장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이를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인도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물품의 하자, 부족 또는 파손에 관하여(하자, 부족이나 파손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하자, 물량부족이나 파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1.6 분쟁 중인 물품의 견본을 매수인의 국가의 견본채취에 관한 기준 규칙에 따라 채취한다. 또한, 매도인은 분쟁 중인 물품을 검사하고 견본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은 파손된 포장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은 이 포장을 조사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다.

11.7 본 판매일반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매도인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상품성이나 특정목적 부합성에 관한 묵시적인 보증 및/혹은 그 외 물량, 품질, 종류, 물품의 특성 및 상태 등이나 소유, 취급, 저장, 수송, 가동, 재료의 사용 또는 처분, 물품의 단독사용이나 다른 물질과 혼합사용에 관한 경고의 적정성에 관한 보증을 비롯하여 어떤 진술이나 보증(명시적이거나 묵시적)도 하지 아니한다.

11.8 상기 제11.7조 및 이하 제11.9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본 판매일반조건에 규정된 부적합 사항의 시정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책이 되며, 이로써 건강과 제조물의 안전에 관하여 적용법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제조물책임)가 아닌 한, 물품의 부적합이나 하자 또는 결함에 관하여 그것이 보증책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책임(과실, 경고 실패나 테스트 실패 등),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든, 매도인의 모든 책임(직접, 간접, 특별, 다중, 조건부 혹은 결과적 손해 포함)은 이행된 것으로 한다.

11.9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윤이나 이익손실, 제품의 용도손실, 매수인의 고객 또는 다른 물품 사용자의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 다중, 조건부 또는 간접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

임(과실, 경고실패나 테스트실패 포함), 무과실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사전에 손실이나 손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총 책임의 범위는 매수인이 문제의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적용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매도인의 과실, 사기 혹은 기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이나 부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1.10 매수인은 매수인의 부주의한 무작위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매수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품이나 물질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청구나 소송(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비용 포함), 화해, 판결금액 및 경비로부터 매도인, 그 이사, 임원 및 대리인을 면책한다.

12. 비밀유지

매수인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든 계약이 완료된 후이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알게 된 상품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정보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비밀유지의무는 정보의 공개 당시에 매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매수인 측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판매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추가 조건

오직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모든 매수인(이하 "판매업자")의 해당 판매에 대하여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음 제13.1조 및 제13.2조는 자가 상표로 제품을 재판매(즉, 매도인의 브랜드명과 다른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재판매)하는 매수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3.1 판매업자는 자신의 이름 및 계산으로, 자신의 위험하에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을 구속하는 여하한 방식이나 매도인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다. 판매업자는 자신이 매도인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

13.2 판매업자는 제품의 판촉, 보관, 포장 및 판매가 판매업자가 동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내의 적용 법령을 준수한다는 점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3.3 판매업자는 매도인이 매도인이 인도한 제품과 관련된 제반 상표 및 Perstorp 상표(이하 "본건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한다. 판매업자는 (i) 매도인이 인도한 제품과 관련한 경우 이외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ii) 본건 상표의 유효성이나 소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판매업자는 본건 상표 또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 상의 여하한 마크나 제품명, 상표, 표시를 대체, 제거하거나 가리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의 구성, 명세 또는 디자인을 개조,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14. 준거법과 분쟁

14.1 본 판매일반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본 판매일반조건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기타 계약은 매도인 회사의 설립국의 실제법이 적용되나, 당해 실제법은 설외사법의 원칙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2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른 물품의 매도와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임명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동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장소는 런던, 파리, 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뉴욕이나 싱가포르 중 에서 국제중재법원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중재결정은 집행가능하며 어느 당사자든지 관할법원에서 중재판정의 확정을 구하거나 달리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14.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관할법원이나 기타 당국에서 연체된 청구서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5. 기타

15.1 관할지의 어느 법원이나 행정 기관이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집행불능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15.2 무효, 집행불능 또는 위법한 규정 중 일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당해 규정이 유효, 집행가능 또는 합법적인 규정이 된 경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15.3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조건상 권리, 이익이나 의무를 양도, 이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다른 회사에 이 조건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매도인은 이 조건상 여하한 미수금 기타 부수적인 권리들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6. 해석

매도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안하였다든 사실은 분쟁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들 조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